



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(ACVA) 안내

III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

- ▶ 관세 과세가격의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이 원칙이며,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.
- ▶ 다만,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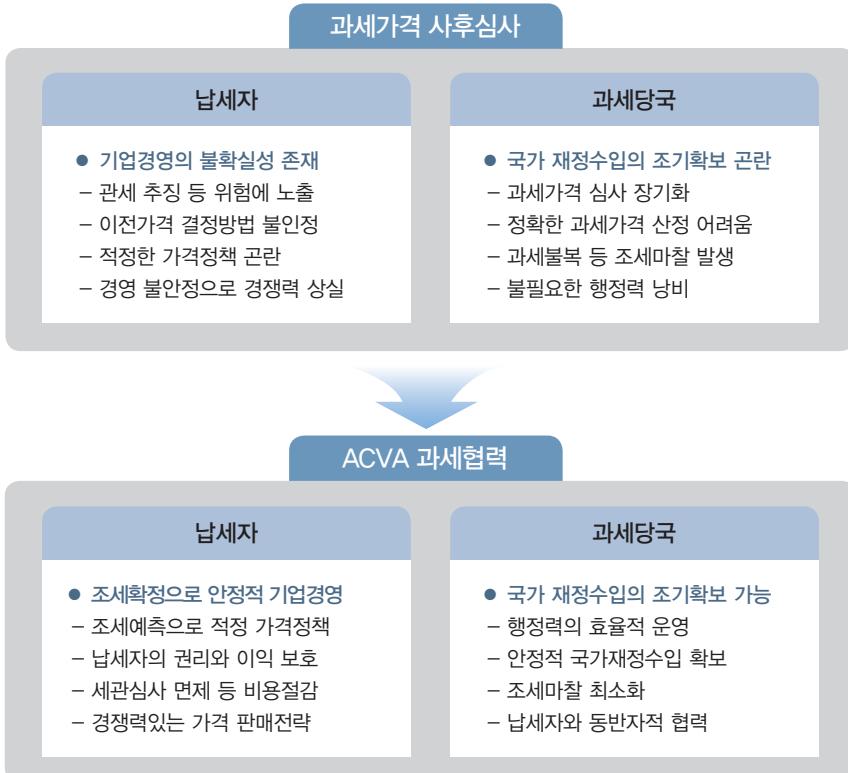
특수관계의 범위

-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
-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
-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
-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%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
-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
-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
-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
- 구매자와 판매자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독점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'특수관계'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간주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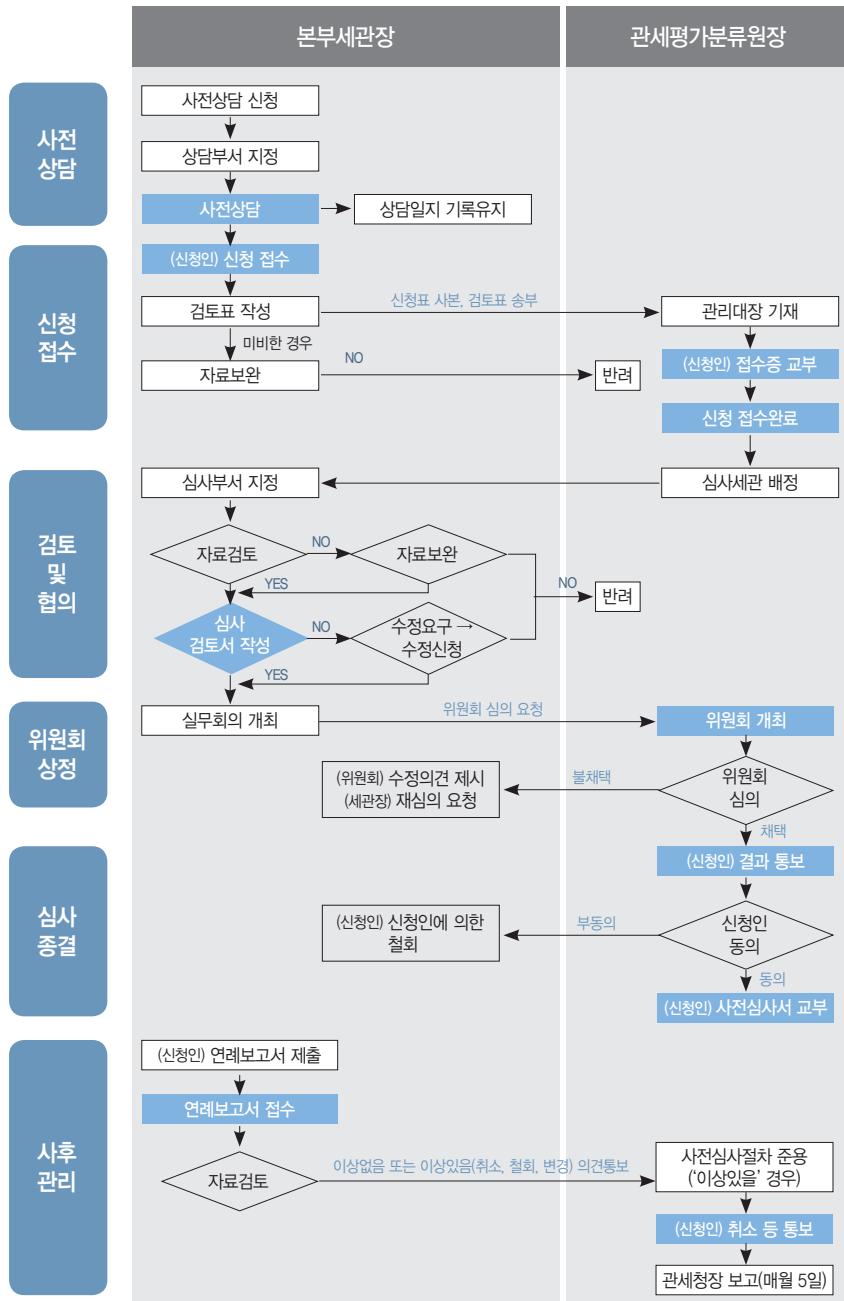
■■■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(ACVA)의 의의

- ▶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(ACVA :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)입니다.

■■■ ACVA 제도는 납세자 · 과세당국 모두 유익합니다.



III ACVA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■■■ ACVA 이용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.

- ▶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승인시점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승인내역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▶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가 면제되고,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▶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 동안 세관의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ACVA 업체는 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

문의처

- ☎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-714-7504
- ☎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32-452-3312
- ☎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2-510-1218
- ☎ 부산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51-620-6313
- ☎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53-230-5321
- ☎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62-975-8072



참고자료

- 제도, 규정, 서식 안내
 - 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 > 관세행정안내 > 품목분류/관세평가 > ACVA 및 관세평가자료실